

企業의 社會的 責任 提高를 위한 競爭法의 課題

權 五 乘*

차 례

- I. 머리말
- II. 企業의 社會적 책임의 본질과 경쟁법
 - 1. 企業의 社會적 책임의 본질
 - 2. 企業의 社會적 책임과 경쟁질서의 유지
- III. 경쟁법의 집행을 통한 企業의 社會적 책임제고
 - 1. 규제의 내용
 - 2. 집행기관 및 규제절차
 - 3. 경쟁당국을 통한 경쟁법 집행방식의 한계
- IV. 친경쟁적 企業활동의 자발적인 촉진 방안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미
 -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 3.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제재수준의 경감 제도
 - 4.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 V. 맺는 말

* 서울大 法大 教授, 法學博士

I. 머리말

기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경제주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에게 주주나 채권자의 이해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기업에게 과연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기업의 영리성과 이해관계인들의 기득권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법적인 관점에 기초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기존의 법리를 확장하거나 규범간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초래하는 쉽지 않은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논의대로 결국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책임이라는 의미로 집약된다면, 그것은 일찍이 경쟁법이 목적으로 추구해 온 소비자후생의 증진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본질은 이미 경쟁법의 관심대상에 포섭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법을 통해서 기업에게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경쟁법은 본질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할 수는 없고, 기껏해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인 역할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도 역시 반경쟁적인 행위나 결과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후생도 기업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도록 할 수는 없고, 소극적으로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에서 논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이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업계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경쟁법의 틀 안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이 제도를 경쟁법의 틀 안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서 친경쟁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경쟁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건전한 시장주체로서 그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소비자의 후생을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용 등과 같은 방법으로 친경쟁적인 시장질서의 형성에 적극 기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본질과 경쟁법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

(1)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가?

기업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주주(shareholder)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이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해 종래 경쟁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법이나 환경법, 노동법 등의 분야에서 그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껏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다각도로 찾아 볼 수 있겠으나 종래의 논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찬반양론의 입장에서 접근했었던 점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점에서 최근 들어 목격되는 수렴론적 시각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스스로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하는 접근방식이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쟁법 측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이윤창출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합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종래의 찬반론을 간략히 짚어보고, 경쟁법적 측면에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주는 효과를 분석해 본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의론 (기업의 책임 = 주주의 이익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의론은 신고전학과 경제학(neoclassical eco-

nomics)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곧 이윤을 창출한다고 하는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만큼 다른 비용을 증가시켜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생산하는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객들에게 전가된다. 기업으로서도 경쟁력 상실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에 실패하게 되어 사회적으로인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¹⁾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본연의 책임을 굳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름 짓자면 그것은 곧 주주(shareholder)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²⁾

이러한 주장은 특히 Milton Friedman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단 하나의 책임, 즉 경제적 성과만 내면 된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은 당연히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경영자는 단지 주주들로부터 전권을 일임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영을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 보자면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종업원이나, 지역 사회, 납품업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의 존재는 어떻게 존중받을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 회의론자들은 주주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과 맺는 계약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고 본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인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은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례하여 그 만큼의 혜택을 받게 된다.³⁾ 이를테면, 경영자와 종업원들은 임금지불이라는 수단으로, 지역사회는 세금징수로, 공급업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보상받게 되고, 이러한 보상을 제하고 남는 나머지 부분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1) 이상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미국과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비교 -”, 『한국사회학』 제36집 2호, 2002, 81면 참조.

2) 이에 관해서는 J. Schwarz, “Corporate Philanthropy Today: Form A. P. Smith to Adam Smith,” *NCPCC Working Paper*, 1996; J. L. Himmelstein, “Looking Good and Doing Good: Corporate Philanthropy and Marketing Strategy: A review and Directions for Research.” in M. R. Solomon and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eds.), *AMA Educators' Proceeds*. Series 53. 등 참조.

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ilton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32(Sept.) 13: 122~126 참조.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긍정론 (이해관계자론)

20세기에 들어서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사회적 책임의 회의론에 반대하는 사회경제학적인 시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협력해야 하듯이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⁴⁾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theory)⁵⁾으로도 불리우는 이 같은 논리는 종래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적 시각이 근시안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사회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어 기업의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P. F. Drucker는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표준에 맞추어서 평가된다고 주장한다.⁶⁾ 기업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사회 속에서 이른바 ‘선량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물론 사회적 책임 긍정론자들도 경제적 성과가 기업의 일차적 책임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자본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역설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가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기업은 현대의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임을 넘어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이상민, 전계논문, 82면.

5) H. L. Johnson, *Business in Contemporary Society: Framework and Issues*. Belmont: Wadsworth..

6) P. F. Drucker, "The New mean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984, pp.53~63.

7) B. A. Carro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Society* 38 (2), 1999, pp.268~295.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쟁질서의 유지

한편, 최근에 들어서는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일정 정도 책임을 진다는 점은 인정하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즉, 종업원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주주도 이해관계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적이 관점에서 보면, 이들 두 집단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는 이익추구이지만 그것이 기존의 단기적인 이익추구와 구분되는 장기적인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론은 기업의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또는 심층적 책임(meta-responsibility)이라고 불리며,⁸⁾ 가령 기업의 자선활동은 이타주의적 시각이나 이익추구적 시각과 같은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시각에 따른다면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한편,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기업의 이윤창출활동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쟁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즉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을 유지, 보호,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에서의 이윤추구와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지 않아야 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경쟁은 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로 인해 기업이 효율성을 창출하고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개발해 가는 원동력이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주이익에도 부합되는 결과가 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친경쟁적 사업활동을 영위하게 될 때 기대되는 부차적인 효과는 후술키로 한다.

8) 이에 관해서는 S. Stump, "Attracting Social Investors, Appraising Shareholders." *Investor Relations Business* 4(Jan), 1999; B. R. Reich, "The New Mean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998, pp.8~17 등 참조.

Ⅲ. 경쟁법의 집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1. 규제 내용

(1) 독과점에 대한 규제

일반적으로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법은 이를 원인으로 금지하는 원인금지주의와 그 폐해만을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독일식의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점규제법 제3조의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는 문제 삼지 않지만 그러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가격 결정, 출고조절, 사업활동의 방해, 신규진입의 방해, 경쟁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침해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⁹⁾ 아울러 어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따르는 법 집행상의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동법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2) 기업결합의 제한

기업결합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그렇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식취득이나, 임원겸임, 영업양수, 합병, 회사신설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단일한 경제적 지배관계 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법은 이와 같은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런데 어떤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

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10) 동법 제7조.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동법은 이러한 곤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6년 제5차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위법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삼지 않고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혹은 카르텔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어서, 우리 독점규제법은 대다수의 경쟁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¹¹⁾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생산이나 출고, 거래지역이나 상대방의 제한, 설비제한, 영업의 공동수행 등의 모습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역시 독점규제법에서는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 즉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¹²⁾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

11) 동법 제19조제1항.

12) 동법 제23조.

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각 행위에 관한 세부유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시켜서 규제하고 있다.

(5)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법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¹³⁾ 아울러 외국기업과 산업재산권 도입계약 등 국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경쟁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집행기관 및 규제절차

(1) 법 집행기구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독립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실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업자들의 행위가 동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심리, 의결하고,¹⁴⁾ 나아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위반행위의 조사와 시정조치, 이의신청, 불복(不服)의 소(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법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권고를 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곧바로 서울 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13) 동법 제26조, 제29조.

14) 동법 제36조 이하.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3) 과징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강제하게 된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기간 내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 것 이외에도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을 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동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즉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과실책임조항을 원용하려면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무과실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피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행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소제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종래 제기되어 왔던 바,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5) 검찰에의 고발 및 벌칙규정

독점규제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이

거나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사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다만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이러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3. 경쟁당국을 통한 경쟁법 집행방식의 한계

국가가 경쟁법의 집행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 내지는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방법에도 한계는 있다. 법리적으로도 경쟁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상태를 배제하는 간접적인 선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제적인 법 집행의 주체이자 단속주체로서 기업은 피동적인 법 준응주체이자 피규제주체로서의 입장에 서게 된다. 결국 경쟁법의 본질에 비추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보다는 기업의 반사회질서적, 반경제질서적 행위를 규제하는 소극적인 접근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계하에 기업이 지게 되는 사회적 책임 역시 반경쟁적 결과를 회피하려는 소극적 입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소비자 후생은 기업들이 그것을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만 도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이 집행을 통한 제재 방식이 아닌 기업 스스로 친경쟁적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IV. 친경쟁적 기업활동의 자발적인 촉진 방안

경쟁법을 통해 기업이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해 왔던 종래의 시스템하에서 정부는 강제적인 법 집행의 주체이자 단속주체로 기업은 피동적

인 법 순응주체이자 피규제자로 자리매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제 경쟁법은 기업 스스로 친경쟁적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거래풍토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에도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단순히 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것이 오히려 근본적이며 이상적인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모색되는 가장 유력한 제도적 강구방안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독려와 모범적인 자율준수기업에 대한 제재수준의 경감조치이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미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념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간략히 정리하면, 위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자율준수에 관한 표준(Australian Standard on Compliance)에서는 좀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¹⁵⁾ 이에 따르면 자율준수프로그램은, i) 법률이나, 규칙, 규약 혹은 기업내의 기준을 파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행위를 규명 내지 대응하고, ii) 기업내의 준법문화를 증진시키며, iii) 기업이 선량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 자리잡거나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¹⁶⁾ 결국,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률파기의 방지, 준법문화의 증진, 그리고 '선량한 기업시민'의 독려 등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현행 규정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내린 정의가 유일한데, 여기서는 기업이 공정거래에 대한 자율준수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소를 도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⁷⁾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직·간접적 혜택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대개는 법을 집행하는 규제자들의 규제편의를

15) ACCC, Compliance Programs - the benefits for companies and their stakeholders.

16) Australian Standard on Compliance - AS 3806 - 1998 at para.1.2.

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21. 마. (4). (가).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성어나 기업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서보다는 일차적으로 부담으로서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이 같은 선입견은 다소 왜곡된 것이거나 근시안적인 측면이 있다. 오히려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기업의 경쟁력과 현실적인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하나는, 기업이 법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을 미연에 회피하도록 조력함으로써 기업의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낭비를 절감시킨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사업목적에 소극적인 위기관리나 대응 차원이 아닌 적극적 긍정적 노선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1) 손실의 회피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율준수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손실을 회피시킨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¹⁸⁾ 대개의 경우 경쟁법 위반은 막대한 과징금이나 벌금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이러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주된 이유는 처벌이라는 법적 위험(legal risk)을 감소시키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경쟁법에서는 범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범위반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범위반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실제 부과받는 양형에서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명목상에 그치고 적극적인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¹⁹⁾ 한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18) 호주의 ACCC가 지난 1999년에 발간한 corporate trade practices compliance programs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본래 형태만 다를 뿐 기업들은 사실상 일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미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Corporate trade practices compliance programs at 1 (Canberra: Ausinfo, 1999).

19) 일례로, 호주의 경우 Trade Practices Commission v. CSR Ltd 사건에서 법원

자율적인 법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보다 훨씬 커야 한다고 보았다.²⁰⁾

기업들로서는 범위반에 대한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행토록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기업으로서의 커다란 잠재적 비용이다.

한편, 기업이 위법행위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 내지 손실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범위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개시명령도 기업의 신뢰도와 명성에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²¹⁾ 경쟁당국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인적비용이나, 경쟁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범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소요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경쟁당국의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당장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고객들도 당해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게 되며, 따라서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기업내부적으로도 순수하게 사업활동에만 전념해야 할 기업의 역량을 경쟁당국이나 법원의 조사에 대응하는데 활용해야 하므로,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신규사업 모색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사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 소요되는 법률서비스비용도 적지 않다.

기업들은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위협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들로 하여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력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나 공급자와 같은 제3자의 범위반행위를 포착해 내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한편 이처럼 위협과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자율준수프로그램

은 피고인 CSR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의 벌금이 부과된 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것은,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풍토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에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CSR사(社)가 가지고 있었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일관성이나 자체내의 강제력이 부족했던 점도 감안되었다. (1991) ATPR ¶41-076 at 52,155.

20) 이점은 ACCC v. MNB Variety Imports Pty Ltd.사건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울러 자율준수의 비용이 범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처벌비용에 비해 훨씬 작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98) ATPR ¶41-617 at 40,758.

21) William J. Kolasky, Antitrust Compliance Programs: The Government Perspective, Corporate Compliance 2002 Conference(PLI), US DOJ, (July 12, 2002) pp.2~4 참조.

을 운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앞의 이유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면 이는 좀더 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2) 이윤창출에의 기여

기업이 바람직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자율준수풍토를 조성하는 것에는 또 다른 기대효과가 뒤따른다. 그것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준법풍토는 혁신뿐만 아니라 상품과 용역의 안전성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²²⁾

기업들이 환경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의 양을 줄이거나 친환경적 포장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포장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은 동시에 포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친환경적 포장재로 전환함으로써 인해 기업이미지가 제고되어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법의 준수는 기업의 이윤을 높이게 된다.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혜택은 그것이 고객에 대한 신용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기업 내에 건전한 법 준수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대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이 고객서비스 기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율준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윤리경영을 독려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선량한 기업

22) 이에 관하여 하버드 대학의 Michael Porter교수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제품의 성능, 안전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수립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을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압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혁신을 통한 기대되는 장기적 이윤이라기 보다는 각종의 기준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적 비용이다. 기업들은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경쟁자들이 비용상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생각은 경쟁력제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열악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특히 환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민감한 선진국들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분별력 있는 구매자들이라면 대개는 보다 안전하며, 청결하고, 조용한 제품들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제품들을 생산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외국시장에 진입할 좋은 방안을 가지게 된다. “M.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London: Macmillan 1990) 참조.

시민”으로서의 기업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거론된다.²³⁾

3)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긍정적 영향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 자체에 대해 각종의 직·간접적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기업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까지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가 자신들의 사업활동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활동을 수행할 의무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보호나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각종의 법률들이 기업과 그 고객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관행을 규율하는 각종의 법률들은 기업과 경쟁사업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직업안전이나 산업관련 법률들은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관계에, 증권관련법은 기업과 주주간의 관계에, 그리고 환경오염관련 법들은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들은 기업이 이러한 각종의 법적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데 조력하게 되며, 따라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3) 제재수준의 경감

이와 같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법 위반을 했을 경우에 경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유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법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경쟁법 위반사건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사주나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임직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경쟁법 위반상황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위법행위를 기업으로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의 경우는 이러한 주장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23) K. Mills, "Implementing Compliance Programs: Training and Persuading",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Continuing Legal Education Conference (1 July 1998).

먼저, 이 같은 주장의 법리적 근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업이 실질적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기업은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에 나타난 기업의 방침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의 당해 행위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모범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경쟁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게 되면, 범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경쟁당국이 본연의 노력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업들로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개선시켜나갈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경쟁법 위반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기업주나, 경영진 등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범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다만 이처럼 자율준수프로그램 자체가 범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건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존재와 이의 성실한 이행이 법집행 과정에서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경쟁법을 위반할 때에는 Sentencing Guidelines 제8C장에 따라 통상 관련매출액의 20%의 범위내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 C 2.6에 따라 상기의 부과기준에 최대 및 최소승수를 곱한 값으로 구체적인 과징금이 결정된다. 어떠한 최대 및 최소승수가 적용되는지는 가이드라인 C 2.5에 규정된 기업의 별점(culpability score)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²⁵⁾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1) 미국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윤리경영의 큰 틀 안에서 환경·안전·보건·

24) 아울러 미국이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다고 하여 특정 범위반 행위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은 Sentencing Reform Act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제기된다.

25) 일례로,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3점의 별점이 경감될 수 있다.

노동 등 여러 법규준수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수도 있고,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프로그램만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정·운영될 수 있다. 특히 각국의 경쟁당국은 자국의 기업풍토와 경제환경에 따라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제시하여 왔다. 이 가운데 미국의 법무부 경쟁국은 기업이 독점금지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의 혜택으로서 제재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i) 첫째, 당해 기업은 자율준수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했었어야 하며, 범법행위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 및 대리점 등 관련자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ii) 기업의 고위직에 속한 특정인들은 상기의 기준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어야 한다. iii) 기업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거나, 충실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기업내의 특정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상당한 임의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한다. iv) 기업은 모든 근로자들과 여타 대리점에게 자율준수 기준 및 절차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치들, 이를테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자율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한 설명서를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v) 기업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예를 들어서, 근로자 및 여타 대리점들에 의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독 및 감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활용한다거나 근로자 및 여타 대리점들이 보복의 우려 없이 조직내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범해지는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vi) 범위반 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자를 적절히 징계하는 등 적절한 교육체계를 통해 자율준수기준이 꾸준히 강제되어 왔어야 한다. vii) 범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에, 기업은 범위반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유사한 범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 가령, 범위반을 방지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정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상기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고위직에 속한 자가 범위반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목과한 경우에는 경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에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단순한 고위직에 속한 자와는 다름)가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효과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아울러서 법 위반이 있고 난 후에 정부당국에 이를 즉시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점의 경감 사유로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7가지의 요건은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경감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우리의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상의 핵심요소

우리 나라의 경우 2003년 발족된 자율준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7대 핵심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²⁶⁾ 여기서 제시된 핵심 7요소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Commitment), ②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③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이다.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Commitment)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내의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가령,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거나, 사내 e-메일을 통해 모든 종업원에게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혹은 사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메시지를 표명하는 방법, 임직원이 최고경영자의 서면 자율준수메시지를 읽어보고 서명토록 하는 방법 등이 그러한 예로 꼽힌다.

2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 2002년 9월. 3~5면.

2)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기업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로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밖에 자율준수관련 임직원의 교육,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 이 같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자율준수프로그램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하다. 다만,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 작성·배포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은 자율준수를 위한 일종의 기업내부 가이드라인으로서, 현업의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되는 것(DON'TS)을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 영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사업활동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선언내용, 경쟁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내용과 사례, 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CP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Compliance Training)

기업내 임직원들이 자신의 담당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고 기업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율준수편람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임직원들, 특히 업무의

성격상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내부감독체계(monitring system)의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엇보다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 활동(Monitoring of high-risk area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기업은 임직원의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채널을 마련하고, 신분상 보복 위험이 없도록 내부제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6) 경쟁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위반책임자가 조직내에서 오히려 보상을 받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법규의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이 때의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정도 또는 책임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²⁷⁾상의 제재수준경감제도에 의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하는 외에, 그 위반상태 또는 위반효과를 해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반의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상태를 해소(담합과기 후 가격 인하, 전속거래계약 파기 등)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해야 하며, 법 위반의 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은 1회성 위반행위(예를 들어 부당한 자산거래)인 경우에는 그 위반효과를 해소(예를 들어 저가매도한 자산을 정상가격에 재매입하거나 부당지원금액만큼 배상할 것)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하여야 한다.²⁸⁾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8) 동 고시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관한 기준, 2. 제2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명장,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서류, 내부감독활동 관련 자료, 범위만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자료,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제재수준의 경감 제도

(1) 경감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하고시를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또는 임직원의 실수로 독점규제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⁹⁾ 기업측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사실을 스스로 신청·입증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기업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제재수준 경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재수준의 경감 신청은 결국 당해 기업이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 모델에서 제시한 핵심 7요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과, 자율준수관리자의 인적사항 등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상황을 공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사본,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을 전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율준수관리자가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그 사실이 전 직원에게 통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실

단계 참조.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적 및 계획을 받기 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율준수편람이 범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범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횟수 및 시간, 공정거래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 사본 및 운용실적, 범위반책임자를 사규에 의해 문책한 사실이 있으면 그와 관련한 기록사본 및 범위반행위가 해소되었다면 그 시점과 해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존에 제재수준 경감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세부내용 등이 필요하다.

(2) 심사관의 조사

위반기업이 제재수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사건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여부, 감경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³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의 공시 여부 3)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4)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5)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별표 3에 규정된 적용제외 사유³¹⁾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등이다. 아울러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의 개요나 시장구조 및 실태 등과 함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여부를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³²⁾

(3) 경감의 기준 및 범위

최종 제재수준의 경감여부와 경감정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질 운영여

30)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31) 동 고시 [별표] 3에서 규율하는 적용제외사유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반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 등),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등이다.

3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평가절차를 거친 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를 통해 제재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운영실태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법적제재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단계로서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기업이 이미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핵심 7요소를 모두 도입, 시행하고 있었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단계까지 이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부과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공시하는 방법은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코스닥증권시장에, 그리고 기타 기업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한다. 법 위반 기업이 상기의 1단계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사건착수 이전에 당해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제재한 경우에는 제2단계로 분류된다. 이때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40%까지 감경할 수 있다.

(4) 경감대상에서의 배제 사유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1단계와 2단계 조치를 모범적으로 설계, 운영해 왔다고 해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수준 경감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나,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위법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이전에 발생한 경우, 다른 규정에 경감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경감) 혹은 부당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경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고발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 또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만으로 법의 목적을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³³⁾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범위반 사업자의 매출규모, 동일한 범위반유형의 반복여부 및 범위반행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은 범위반행위의 악질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리하여 위반사업자가 전술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³⁴⁾ 다만, 면제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은, i)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독점규제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중 가격담합·공급량 제한·입찰담합·시장분할·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ii) 독점규제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제1호 중 가격담합·공급량 제한·입찰담합·시장분할·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i)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9조 또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위반행위 중 피해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면서 위반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또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한편, 위반행위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발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 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단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해서는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³⁵⁾

3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제2조.

34) 동 지침 제3조제1항.

3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6.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관한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위반행위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의 경감]

제재의 유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 1단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 2단계	적용제의 사유 존재
과 징 금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20%까지 감경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40%까지 감경	경감혜택 없음
검찰고발	면제 가능	면제 가능	면제혜택 없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	면제 가능	감면혜택 없음

4.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3월 업계와 학계, 법조계를 중심으로 설립된 자율준수위원회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기업들이 자체실정에 맞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규범을 제정·선포하였다. 이와 아울러서 2002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기준고시, 법위반공표지침, 형사고발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율준수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의 경감제도를 시행하여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유통업, 건설업, 손해보험업, 정보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운용의 성과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상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아직은 일부 업종의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단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제재수준의 경감혜택을 누리려는 비용절감 차원에서의 접근이 두드러진 동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준법질서나 윤리경영이 아닌 경쟁진화적인 기업활동의 구현이 경제전반의 기조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몇 가지 법적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등 하위규범에 규정되어 있어서 규범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단계에서 고려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특히 호주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법원이 제재수준을 최종 판단하는 과정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불공정거래 행위 가운데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공정경쟁규약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시정조치 중 단순한 '당해 행위의 중지 명령'에 범위반 기업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용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일정기간 후 조치결과를 경쟁당국에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³⁶⁾

또한 현재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영업일선의 직원들이 법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재벌총수의 불공정한 행위 결정이나 개입에는 차단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우수기업들 가운데 대주주인 재벌총수나 최고경영자가 개입된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 교육과 감독시스템을 통해서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오너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최고경영진의 의식은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³⁷⁾ 따라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재벌총수)의 위법관련이 있을 때 경감혜택을 배제시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36) 심영섭,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요건 - 요약문 -, 2003. 4, 10면 참조.

37) 전계보고서, 5면.

V. 맺는 말

기업이 영리추구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진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철저히 집행하여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하여 기업이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질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건전한 시장주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경쟁법적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수범자인 기업 그리고 수혜자인 소비자가 각각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래에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가 보완관계가 아니라 상충관계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에 위반한 사업자의 행위를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고, 기업은 가능한 한 그 제재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쫓고 쫓기는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소비자도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발적으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주권자로서 경쟁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감시자로서, 한편으로는 경쟁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기업들을 철저히 규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그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양자를 결합하여 경쟁법의 집행에서도 예컨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에게는 제재수준을 경감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방송 등과 같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시장경제에 있어서 경쟁질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들은 철저히 고발하고 반대로 자율적으로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들은 널리 알려져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게 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New Roles of Competition Law to strengthen Enterprises Social Responsibilities

Kwon, Oh-Seung*

Basically, enterprises are just a private economic entity that pursue their personal profits. In this sense, it's not an expectative to ask firms take social responsibilities other than the obligations on their shareholders or creditors. As many evils occurred from the capitalism come out, however, the idea that enterprises should have social responsibilities is newly forming and getting more expanded. Especially, the competition law whose goal is consumer welfare is close related to enterprises' social responsibiliti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has inherent limitations to fulfill the role to strengthen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n that it can't help adapting a passive way by which it just prohibit illegalities. Thus it can be more desirable to make an environment in which enterprises are willing to comply with the rule of the market econom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ended to deal with the issue of enterprises' social responsibilities newly with an angle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irst part,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rprise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the competition law. And then, it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regulative approaches and pursues a new way of approach to strengthen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Based on the said work of analysis, it insists on as a conclusion that the current Korean competition law need to promote compliance programs among enterprises and expand the scope of leniency or immunity for the enterprises that have voluntary been employing and effectively utilizing them.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 Ph.D in law